

지원대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A to Z

전업농이상 농가에 지원 (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이상)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에 한함
 무허가축사 제외 · 계열화사업 개보수 지원농가 제외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장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농장 정문 입구 차량 소독조 설치 시 지원

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DDA(다자간무역협상)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각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상태이며, 1차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추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지자체별 마감날짜 상이). 또한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자격 규정에 대한 일부 지침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축산업 등록일이 2006년 이전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며, 지원 자격도 전업농이상이 아닌 사육농가도 전업농으로 규모를 확대(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이상)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은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축사시설에 로봇착유기, 계란선별기, 집란기, 초장기 등도 포함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을 놓고 사육면적 기준 및 한도액, 용자조건 등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사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협회는 정부 정책이 대동물위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신보 등 정책자금 용자 시 무허가축사 담보 설정 제외 문제와 가설 건축물의 허가기간 연장관련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으며, 오리농가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국내 친환경축산업 기반구축과 동물복지 농장을 실현코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

| 집중탐구 |

화 사업은 대략적인 밑그림이 나온 상태. 그러나 지원대상인 농가들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제대로 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 집중탐구에서는 지원 대상 농가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의무준수 사항과 지원제외 사항 및 지원자격 및 요건까지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이란?

자유무역협정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지침.

◎ 사업대상 오리농가

사업대상은 전업농가에 한하고 있다. 오리 전업농의 기준은 오리 5,000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하며 종오리 5,000수 이상, 부화장은 1회 입란규모 100천개 이상인 축사를 말한다.

◎ 지원 자격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농가(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단,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 규모까지 지원 가능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 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 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용자)과 이차보전방식(용자) 대상자 구분

- 현행방식(보조+용자)은 현행지원한도 규모내 농가를 지원

-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미만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이내)까지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 상한규모를 설정 운영

- 현행 방식(이하 보조사업자) : 현행 상한액 규모와 동일

- 이차보전 방식(이하 용자사업자) :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 설정(최대 50억원)

* 이차보전 방식은 이월 불가(대출기간마감일 연장은 가능)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보조사업자 및 용자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시설 등)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 지원 제한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이차보전한도액 (현행규모 초과)
			보조+융자(현행)					
			축사(내부시설 포함)		축산시설			
			한도액	사육규모(면적)	한도액			
폐사축·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오리	육용오리	304천원	700	10,000(1,230~2,460㎡)	50	50	3,000 (2,460㎡ ~)	
	종오리	380천원	1,000	10,000(1,665~3,300㎡)	50	50	5,000 (3,300㎡ ~)	
	부화장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100 ~ 200천개	100	50	3,000 (1회 입란규모 200천개 ~)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 ~ 1,500㎡로 함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 (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두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등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

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 지원 대상(오리)

- 축사 : 무창 또는 개방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사육두수)을 감안한 상한액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축사시설 :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케이지, 전기시설 등 내

| 집중탐구 |

부기자재

- ※ 부화장의 경우 부화기기(발육기, 발생기), 공조 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내부기자재(소독시설, 이항기, 콘트롤기, 세척기, 전기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계란 또는 종란 보관창고, 계란세척기,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 관리시스템 등) 등

■ 지원시설 및 장비 지원 한도액(오리)

- 폐사축처리시설 :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 200백만원, 사료배합기 : 20백만원

■ HACCP 인증 받아야만 정부지원액 100% 지원 가능

단, 건축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지만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정부지원액의 90%수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잔액 지원

◎ 우선지원을 받게 되는 농가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③ 휴대용 방역기구비
-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⑥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제출(5년간)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육용종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흑염소,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군, 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d style="text-align: center;">‘09</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11월까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두(수)</td> </tr> </table>				‘08	‘09	‘10	‘11.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08	‘09	‘10	‘11.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개축(), 개보수()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m ²)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업비			
		'12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행 면적 (축산업등록면적, 사육두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_____ m ² (_____ 두)	_____ m ² (_____ 두)	_____ m ² (_____ 천수)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m²)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산란계의 경우는 축산업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 융자)	_____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_____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m ²)	_____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 사업부지 등 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20일이상 ~ 40일미만 ○ 10일이상 ~ 20일미만 ○ 5일이상 ~ 10일미만 ○ 1일이상 ~ 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지정 ○ HACCP 지정 신청 ○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5 0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 계열화 직역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1.1 ~ '11.12월 	+20		*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 ~ '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50		* 사업부지 등 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0		
②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50		*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20일이상 ~ 40일미만	40		
	○ 10일이상 ~ 20일미만	30		
	○ 5일이상 ~ 10일미만	20		
	○ 1일이상 ~ 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10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0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 HACCP 지정	20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HACCP 지정 신청	10		
	○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5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 가축공제 가입종인 경우 ○ 미가입	30 0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1.1 ~ '11.12월	+20		*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 ~ '11)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50		* 사업부지 등 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0		
②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50		*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20일이상 ~ 40일미만	40		
	○ 10일이상 ~ 20일미만	30		
	○ 5일이상 ~ 10일미만	20		
	○ 1일이상 ~ 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10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0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 HACCP 지정	20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HACCP 지정 신청	10		
	○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5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30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미가입	0		
⑥ 수상경력 (20)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범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 '11) 대상

□ 총 득점 : 점